

# 경북체육상 시상규정

제정 2016. 4. 1

경상북도 승인 2016. 4.27

개정 2018. 2. 6

**제1조(명칭)** 본 규정의 명칭은“경북최고체육상”(이하“체육상”이라 칭함)이라 칭한다.

**제2조(목적)** 본도 체육진흥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업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를 표창하여 그 공적을 기리고, 경북체육발전의 모범을 삼고자 함.

**제3조(시상부문)** 경북최고체육상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다.

- ①공로상
- ②지도상
- ③연구상
- ④최우수선수상
- ⑤최우수단체상
- ⑥신기록상(한국신기록 이상)

**제4조(특별상)** 경북체육발전에 협조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특별히 시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특별상을 수여할 수 있다.

1. 모범경기단체상
2. 시·군지부상
3. 장한어버이상
4. 감사패
5. 표 창

**제5조(추천기간)** 체육상 수상후보자 추천기간은 매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 
단, 사정에 따라 본회에서 추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**제6조(추천 및 심의)** 체육상 및 특별상의 추천은 경상북도체육회장, 회원종목단체장

시·군체육회장, 경상북도교육감으로 하며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.

**제7조(공적산정기간 및 수상회수제한)** ①수상후보자의 공적산정 기간은 추천년도 12월 말을 기준으로 3년이상으로 하며, 1회 수상에 한 한다.

②신기록 상은 기록수립 당해연도에 한한다.

**제8조(시상)** ①체육상 수상자에게 패와 상금 또는 부상을 시상할 수 있다.

②특별상 수상자에게는 패(상장)와 부상을 시상할 수 있다.

③부상은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**제9조**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(2018.2.6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